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②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8. 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28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. 기준
투자자유 의사향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u>2023.06.23</u> <u>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톤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)</u> <u>2024.08.07</u> - 환매일정 변경 : 2(3)영업일 기준가로 4(4)영업일에 지급 → 3(4)영업일 기준으로 3(4)영업일에 지급 -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, 기업어음증권)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---------------	---------	---	--

[illegible]

		▶ <u>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 ▶ <u>양도성 예금증서</u>
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번호 정정	<u>7) 환매조건부 매수</u> <u>8) (생략)</u> <u>9) (생략)</u> <u>10) (생략)</u>	<u>〈삭제〉</u> <u>7) (현행과 같음)</u> <u>8) (현행과 같음)</u> <u>9) (현행과 같음)</u>
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<u>11) (생략)</u> 〈신설〉	<u>10) (현행과 같음)</u> 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번호 정정	<u>12) (생략)</u>	<u>11) (현행과 같음)</u>
기재 정정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
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 및 기재 명확화	(2)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	(2)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<u>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-이상(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
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	<u>7) 환매조건부 매수</u> <u>8)(생략)</u> <u>9) (생략)</u> <u>10) (생략)</u>	<u>〈삭제〉</u> <u>7) (현행과 같음)</u> <u>8) (현행과 같음)</u> <u>9) (현행과 같음)</u>

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 번호 정정 기재 정정	11) (생략) (신설) 12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	10) (현행과 같음) ▶ 환매조건부 매수 11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 상 나. 투자제한	기재 정정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1)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단기 대출 (2)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단기 대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1)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 른 단기 대출 (2)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 른 단기 대출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 번호 정정 기재 구체화	1) 투자전략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 자전략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/트러스트중 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신설) (3) (생략) 2) 위험관리 전략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위 험관리 전략 (신설)	1) 투자전략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 자전략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/트러스트중 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3) 크레딧 전략 (4) (현행과 같음) 2) 위험관리 전략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위 험관리 전략 세부 위험관리 전략 기재 구체화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8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<신 설>	<u>2024. 6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


라. 운용자산 규모			
------------	--	--	--